

國 内 事 件

實用新案 登錄無効

〈大法院 第1部 判決〉

裁判長: 大法院 判事 김 윤 행

關與判事: " 이 영 섭 김 용 철 유 태 흥

1. 事 件: 76후 17 實用新案 登錄無効
2. 審判請求人(被上告人): 하수홍(서울冠岳區 新林洞 487의 9)
3. 被審判請求人(上告人): 이재기(서울道峰區 騰阿1洞 48-80)
4. 原審決: 商工部 特許局 抗告審判所 76. 4. 29字 1975. 抗告審判 第75號審決
5. 主 文: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한다

6. 理 由

被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
理由 第1點 및 第2點에 대하여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被
審判請求人の 本件 實用新案登錄 第
9374號(前者라고 한다)는 1971年 12
月 31日에 出願하여 1972年 11月 4
日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考案의 要
旨는 明細書 및 圖面의 匣體內에 收
藏된 電磁石의 鐵芯先端에 外周壁
으로 割口나 掛口를 각각 反對方向
으로 挖折한 圓筒形 로울러를 匣體
의 外廓으로 약간 露出되게 側設하
여 그 側面에 스프링을 탄설하고 철
심이 掛口에서 이탈할때 彈發回轉
되게 構成한 自動開閉鏡이고 折外
홍일표가 1970年 2月 21日 실용신안
등록을 願한 바 있는 甲2號證의 大
門自動開閉器의 고안(後者라 한다)
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電子코일
을 付着하고 中央支持板에는 一側
端部에 간합돌기가 突設된 流動板
을 그 左側下面에 手動開閉口를 右
側下面에 스프링을 각각 유착시키
고 유동판의 유동에 따라 作動되도록
지지판의 측면에 上下 2段스위

치를 부착시키고 우측에는 하부일
단에 유동판의 간합돌기가 감합될
감합凹口를 凹設한 원통형의 開閉
掛止環을 軸에 유착하였다.

兩者는 同一性이 있다 할 것이고
前者는 그 등록출원전에 他人에 의
하여 출원되고 또 그 등록출원전에
公告된 後者에 의하여 新規한 考案
이라 할수 없으니 舊實用新案法의
關係規定에 의하여 無効임을 免할
수 없다는趣旨로 判斷하고 있다.

따라서 上告를棄却하고 上告費
用은 敗訴者の負擔으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
이 判決한다.

參考: 위 上告審 事件의 抗告審
및 一審判決 要旨는 다음과 같다.

抗告審判: 1975年 抗告審判 第75
號審決

審判請求人(被抗告審判請求人)

하수홍

被審判請求人(抗告審判請求人)

이재기

위 當事者간의 1974年 審判 第234
號(登錄第937號 實用新案無効審判)
審決不服抗告審判事件에 대하여 主

〈21〉

國 内 外 審 判 事 例

調

查

部

文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本件 抗告審判의 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判：1974年 審判 第234號 審

決

審判請求人：하 수 흥

被審判請求人：이 재 기

위 當事者간의 登錄第9374號 實用新案의 登錄無効 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本件 登錄 第9374號 實用新案의 登錄은 이를 모두 無効로 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 * *

—國外事件—1

EC法院의 商標判例 <III>

—Negram III 事件—

EC法院은 1974年 10月31日 Negram II 와 III의 2개事件을 判示하였으며 그 가운데 商標事件인 III의 사건은 Centrafarm B.V 및 이 會社의 理事인 Adriaan de Peijper와 Winthrop B.V社의 사이의 商標權侵害事件에 있어 法律問題가 EC 법원에 寄託된 것으로 世稱 Centrafarm事件이라 부른다.

1. 事件概要

英國의 Sterling-Winthrop Group Ltd는 네덜란드에 全額出資系列會社인 Winthrop B.V를 設立하고 네덜란드에 Negram의 商標를 登錄하였다. 또한 同社는 Negram의 상표를 英國에도 등록하였다.

Winthrop B.V는 母會社의 製品인 泌尿管用의 醫藥에 Negram의 상표를 붙여서 네덜란드에 판매하고 있었다.

Centrafarm은 그 영국의 關聯會社가 英國에서 Sterling-Winthrop Group Ltd에서 購入한 同醫藥을 네덜란드에 수입하여 Negram의 상표를 붙여서 네덜란드에서 판매하였다. 이 의약은 英國에서의 값은 네덜란드 값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1971년 6월 16일 Winthrop B.V는 로테르담의 법원에 提訴하여 Centrafarm과 그理事 Peijper는 Winth-

rop B.V의 所有商標인 Negram을 칙정 간접으로 침해하는 것을 中止토록請求했다. 그후 이 청구가 許可되었으므로 Centrafarm은 헤이그抗訴法院에 抗訴한 바 항소법원도 Winthrop에 有利하게 判決한 까닭에, Centrafarm과 Peijper는 大法院에 上告하였다. 대법원은 EEC條約의 第177條規定에 따라 다음과 같은 質問에 대한 EC법원으로서의 裁定을 청구했다.

2. 英大法院의 EC法院에의 質問

質問：商品의 自由流通에 대한 規範에 관하여……

A-1: EC에 屬하는 相異한 諸國에 존재하고 어느 콘체른의 一部를構成하는 다른 企業이 어느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權利를 賦與하고 있으며

A-2: 그 상표를 붙인 상품이 EEC加盟國A에서 상표권자에 의해 適法的으로 市場에 出荷된 후에 제3자에 의해 다른 가맹국B에 輸出되어 그 나라 B에서 다시 거래되었고

A-3: B국에서의 商標法에 따르면 그 상표를 붙인 상품이 A국에서 그 상품의 權리를 가진 者에 의해 적법적으로 市場에 출하되었고 해도 B국의 상표권자는 그

상품이 B국에서 販賣되는 것을 阻止하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고 規定한 경우

상품의 자유유통에 관한 EEC의 規範은 제36조의 규정에 不拘하고 상표권자가 上記의 A-3에 記載한 權리를 行事하는데 妨害가 되는가.

B: 省略

C: A의 質問에 表示되는 商標權者의 行爲가 政府의 措處에 의한 價格의 相違로 正當화할 수가 있는가.

D: 問題의 상품이 醫藥인 까닭에 提起되었다. 商標權者는 意約의 缺陷에 대하여 公衆을 보호할 義務가 있으므로 A에 記述된 바와 같은 상표권자의 행위는 許容되는 것이 아닌가.

3. EC法院의 判示

A 1-3의 모든 質問에 대하여 EC法院은 肯定的으로 判示했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자유유통에 관한 한 조약 규정 특히 그 제30조에 따라 수입에 대한 量的制限과同一의 效果를 갖는 모든 處置는 EC의 가맹국사이에서 禁止된다.

그러나 조약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 조약규정은 工業所有權의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正當화되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에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제36조의 第2文에 의하면 조약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가맹국의立法에 따라 承認된 權利의 存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같은 權利의 行사는 狀況如何에 따라서는 조약의 禁止命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제36조는 EEC의 基本原

則에 대한例外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36조는 상품의 자유유통의 예외를 그 예외가 공업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認め되는 것이다.

상표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은 상품에 의해 보호된 상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둘 목적을 위하여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排他的權利를 갖는 것임을保障함에 있으며 그 때문에 그 상표를違法으로 불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의地位와評을 이용하려는競爭相對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느나라의國內法이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다른 EC가맹국에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상표권자의 권리は消盡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있다면(例: 베델란드) 상표권자는 다른 가맹국에서 시장에 출하한 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의 가맹국에의輸入을阻止할 수 있다는 결과

가 되어 상품의 자유유통에 대한障害가發生할지도 모른다.

어는 가맹국(輸出國)에서 상표권자에 의해 또는 그同意를 얻어製品이 적법적으로 시장에 놓여 있을 때에는前記한 바와 같은 장해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표권자의侵害問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권자 스스로나 그 동의 아래 다른 가맹국에서 시장에 출하한 제품의 수입을 상표권자가 저지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권자는各國의국내시장을 가를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가맹국간의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이같은 제한은 상표때문에創出되는排他的權利의本質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의 질문과 같은 상표권자에 의한 권리의行使는 EEC시장내에서의 상품의 자유유통에 관한 EEC조약과兩立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대법원의 EC법원에 대한 질

문은 A-1~3뿐 아니라 A의 질문에 대해否定의 경우를 예상하고 B,C까지의複合質問을 제출하였으나 A에 대해肯定의으로 판단되었으므로 B의 질문은無意味하게 되었다.

그러나 C의 질문에 대한판시는 EC當局의任務의 하나는 가맹국간의정당한競業行爲를歪曲하는要素를排除하는데 있으므로 문제의 값의相違라는 요소는 A의 질문에指摘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판시했다.

또한 D의 질문에는 결합이 있는의약으로부터公衆을 보호함은 중요한것이며 제36조도 또 사람의生命과健康을 지키기 위하여 상품의유통자유원칙의例外를 인정하는것이나 그는厚生의分野에서處理되어야 할 문제이며工業所有權의보호문제와는別個의 것이라고판시했다.

(C記)

—(國) 外 事 件 — 2

日 本 判 例

商標稱呼의 一體性과 類似判斷

日本大法院 1977年 4月15日判決, 1977年(行収)第14號

1. 上告人: X

2. 被上告人: 特許廳長

3. 判決主文

本件上告を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の負擔으로 한다.

4. 上告理由

① 原審이 「うかい起上り」(音譯: 우까이 오끼아가리)를 우까이와 오끼아가리의結合標章으로判斷한데 대해 다른登録例「信長오끼아가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끼아가리最中, 「加賀八幡오끼아가리」, 「大名오끼아가리」, 「長良川오끼아가리」, 「오끼아가리城」등本願商標와의類似를判斷하지 않고 「오끼아가리」(オキアカリ)의 등록와의類似性을 판단하도록 본원상표의一體性을 깨고結合으로 판단함은違法인 것.
② 上記의 다른 등록에도 본원상표와 같은 2개의 결합(信長과 오끼아가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과均衡이取해지지 않는 것.

③ 引用商標「오끼아가리」(하리가나)는 1953年公告이나상기에列舉한 다른 등록에(례를들어信長오끼아가리最中등)은 그후계속登録된 것으로 본원상표에局限하여 인용될必然性이없는 것, 또「오끼아가리」는 그만큼識別力이弱하여졌다는 것.

5. 判決理由

本願商標는舊商標法(大正10年法律第99號) 2條1項9號의規定에 따라登録할 수 없다고한原審의認定判斷은原判決擧示의證據關係에비추어是認할 수 없는것이아니라그원판결에所論의違法이없어論旨는採用할수가없다. 따라서行政事件訴訟法第7條, 民訴法第401條, 第95條, 第89條에의거하여裁判官全員一致의意見으로主文과같이판결한다.

6. 事件과 原判決要旨

X는 「우까이오끼아가리」(らかい
起上り)의 文字를 縱書하여 舊第43
類最中을 指定商品으로한 본원 상표
에 대하여 出願하였으나 拒絕査定
을 받았으므로 審判를 請求한 바 審
決은 引用商標「오끼아가리」(하라가
나: 指定商品은 만두)와 對比하여
「우까이오끼아가리」는 「ウカイオ
キアガリ」(우까이오끼아가리)로 呼
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호칭
이 全體的으로 比較의冗長인 것과
「우까이」의 하라가나文字만의 前半
과 「오끼아가리」가 漢字와 하라가
나만의 後半과의 構成에 關係되므로
去來者, 需要者는 인용상표와 같
은 「오끼아가리」(하라가나)의 觀念
과 称呼가 생겨 유사할 뿐 아니라
兩者的 지정상품이 그 生產者, 販
賣場所등 流通經路 및 用途등을 같

게하는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原
審(東京高法)에 上訴했다.

원심은 본원 상표는

① 鶴飼, 有界,迂回等의 字音인
「우까이」와 사람의 動作에 대하
여 特定판념이 있는 「起上り」(오
끼아가리)의 결합이므로 그 전체
를 일체로 호칭하고 판념할 理由
가 없다.

② 簡易迅速을 尊重하는 商品去
來에 있어 상품의 出所를 識別하
는데 상표를 簡略化하여 그構成
중 親近感을 느끼기하고 記憶하
기 쉬운 部分을 짜지는 경우가 적
지 않은 것.

③ 이 상으로 미루어 거래자, 수
요자는 본원 상표의 구성 중 일반
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기 쉽고 기
억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오끼아

가리」의 문자의 부분을 갖고 상
품의 출소를 식별하여 거래할 경
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
용상표와 同一한 칭호, 판념이 생
긴다.

④ 지정상품은 그 生산자, 판매
장소등 유통경로와 용도등을 같
이 하게 되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하여 原審決을 支持하
였다.

7. 解說

本判決이 지정하는 본원 상표와 인
용상표만의 對比에서 오는 結論에
는 賛同이다. 그러나 上告理由에
서 지적대로 본원 상표만이 인용
상표(最初의 비슷한 登錄商標)에 의
해 거절된다는 一種의 不運은 法의
平等이란 立場에서 볼 때不合理 또
는 違法의 판단을 시인한 것이 되
어 찬동할 수 없다는 解釋도 있다.

(國) (內) (短) (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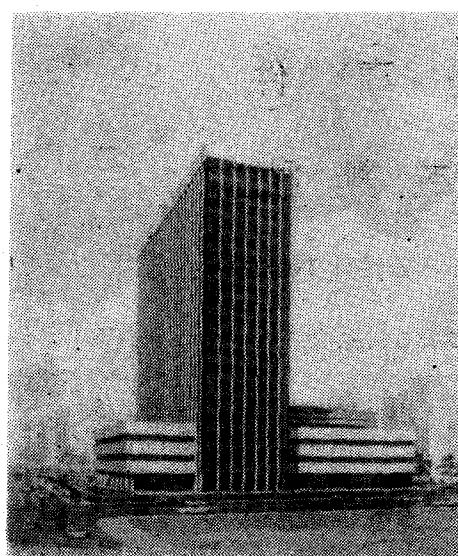
◇全經聯會館建立◇

汝矣島에 地上 19層의 매머드

全國經濟人聯合會(會長: 鄭周
永)는 지난 10月 10일 서울 永登
浦區 汝矣島洞 124(5.16廣場 東
便)에서 會館建立 起工式을 가졌다.

丁一權 國會議長을 비롯한 内
外貴賓 및各界人士들이 多數 參
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된 이날
起工式에 이어 現場에서 記念祝
宴도 함께 베풀었다.

1979年 9月 竣工豫定인 이 회
관은 3,674坪의 基地위에 地下 2
層, 地上 19層의 延建坪 11,540坪
의 鐵骨콘크리트造의 매머드建物
로서 國際大會議場을 비롯, 常設
展示場, 國際通信室 등 各種 國際
의 規模의 施設을 갖추게 된다.



東洋精密·大韓電線等 會員社

精密度競進大會서 受賞

商工部 主管, 韓國精密機器公
司主催 1977年度 精密度競進

大會에서 本會 會員企業東
洋精密工業株式會社(代表:
朴律善)가 綜合 1位로 最優
秀賞을, 大韓電線株式會社
(代表: 薛元亮)는 綜合2位
로 優秀賞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受賞한 會員企業
은 다음과 같다.

金星通信株式會社 綜合
2位 優良賞

大韓重機工業株式會社

綜合 2位 優良賞

起亞產業株式會社 綜合 2
位 優良賞

大宇重工業株式會社 技
術賞

株式會社 大韓造船公社
技術賞

利川電機工業株式會社

獎勵賞

韓國후지카工業株式會社
獎勵賞